

국민연금공단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공무직 대체인력)를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수행 업무	인원
광주지역본부_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피평가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의학적 심사	1

□ 지원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분야	지원자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 : 만 60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참고 1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직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 소지한 사람 - (간호사)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 경과한 경우, 갱신 후 자격이 유효한 자※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경력산정)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으며, 보수 산정과는 무관함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이며, 조기 복직 시 계약기간 만료(해지) 및 근로관계 소멸, 정규직 전환과 무관

□ 계약기간 : 2023. 10. 13.(금) ~ 2024. 3. 31.(일)

* 계약기간은 휴직자 조기복직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계약해지 30일 전 사전 통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기타 복무 관련 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름

□ 근무장소 :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무진대로 251)

□ 보수월액 : 월 2,880,000원

* (포함) 중식비 및 명절휴가비, (별도)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등은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름

2.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지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방법: 이메일 (nps02411@nps.or.kr)로만 접수· ※ 우편·방문·팩스 등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서류 모두 도착(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3.9.7.(목) ~ 9.14.(목) 18:00까지
서류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3층 다목적회의실·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별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	23.9.20.(수)/ 합격자 발표일 23.9.22.(금) 개별통보 (면접일시, 장소 등)
면접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3층 회의실· 방법: 조별면접(1개조 5명, 조별 30분 내외) 실시	23.10.4.(수)
최종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전형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1명의 예비합격자 선발	합격자 발표일 23.10.11.(수) 개별통보
임용	2023. 10. 13.(금) 예정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역 (※ 면접전형 시 제출)
공통	<p>① (경력사항 관련) - 경력사항 기재자 아래 사항 필수 제출(1-1, 1-2 모두 제출)</p> <p>1-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u>경력증명서</u> 전체</p> <p>1-2) <u>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종</u>(예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p> <p>※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u>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관련분야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 (경력(재직)증명서 상 해당업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u></p> <p>② (우대사항 관련) - 해당자에 한함</p> <p>2-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포함),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p> <p>2-2)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p> <p>※ 2-1)~2-2)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3.9.14.)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p>
근로능력 평가직	<p>○ (지원요건 관련) 입사지원 시 기재한 필수 자격(면허)증 사본</p> <p>- 간호사의 경우, 면허 갱신 여부 확인 목적 「보건의료인 면허 증명서」 추가 제출 (※ 접수마감일 23.9.14.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p>

4.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대상자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전형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서류·면접전형	10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서류전형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서류전형	5

-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하며, 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동점자 발생시 우대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지정 기간이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5. 이의신청 절차 운영

- 목적: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지원자 문의 응답
- 운영방법
 - 접수처: nps02411@nps.or.kr
 - 운영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3.10.11. ~ 10.26.)
 - 세부방법: 지원자의 메일 또는 전화 문의에 답변
 - 예외사항
 - 본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전형위원 등의 개인정보 및 타 법령에 접촉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공정채용을 위배하는 사항 등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 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 정보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광주지역본부 ☎062-958-200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7.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